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승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34

발의연월일: 2022. 8. 2.

발 의 자:최승재·서병수·배준영

이종배 · 서일준 · 이명수

노용호 • 박성민 • 엄태영

조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12월, 은행의 신용공여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은행에 신용공여 계 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었음.

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객에 게 알리도록 함으로써, 고객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(안 제30조의2제2항). 법률 제 호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2항 중 "체결하려는 자"를 "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"를 "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, 제2항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"으로 한다.

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마다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금리인하요구권 고지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금리인하 요구) ① (생	제30조의2(금리인하 요구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<u>체</u>	② <u>체</u>
<u>결하려는 자</u> 에게 제1항에 따라	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
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	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
알려야 한다. <후단 신설>	<u>있는 자</u>
	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고
	있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
	간마다 알려야 한다.
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	③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
<u>요건 및 절차</u> 에 관한 구체적	구의 요건 및 절차, 제2항에 따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
	법